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9231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2.

발 의 자 : 윤건영 · 양부남 · 신정훈
윤준병 · 한준호 · 차지호
이광희 · 김문수 · 정태호
김성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.

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.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 본문 중 “광역시”를 “통합특별시·광역시”로 한다.

제31조의2제3항 본문 중 “광역시장”을 “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략)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와 시·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~ ⑥ (생략)

행과 같음)

③ -----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-----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